

1. 개정이유

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,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등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781호, 2026.06.09.공포, 2026.12.10.시행)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폐전기·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(안 제5조의5)

- 별도의 방문·설치가 필요한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

나.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(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)

-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

다.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)

-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·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

라.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(안 별지 제21호서식)

-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

한 처리기간을 명시(7일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5의 제목 “(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)”을 “(대형제품 및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대형제품 및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16조의4제5항 본문에 따른 대형제품은 별표2 제1호와 같다.

제11조의3의 제목 “(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)”을 “(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공단”을 각각 “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2항, 제5항 및 제6항”으로, “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”를 “공단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할 때”로 한다.

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

어 있는 부품·장치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.

1. 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구동전동기
2. 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감속기
3. 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전력변환장치
4. 수소전기자동차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
5. 건설기계·농업기계 구동전동기

②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.

1. 태양광 패널
2. 풍력발전기 나셀
3. 풍력발전기 블레이드
4. 에너지저장 장치에 탑재된 축전지

③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“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④ 법 제20조의4제4항 단서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별표 2의3과 같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(제5조의5 관련)”을 “대형제품 및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(제5조의5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은 다음 각 목의 제품으로 한다.

가. 냉장고

나. 세탁기

다. 에어컨디셔너

라. 러닝머신

마. 전기안마기

바. 텔레비전

사. 복사기

아. 식기건조기 · 식기세척기

자. 전기정수기(냉 · 온수기를 포함한다)

차. 자동판매기

카. 의류건조기 · 의류관리기

타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형제품

2.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 기준

가. 제품의 연식, 크기, 용량, 가격, 구조,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.

나.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,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.

다.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,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

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.
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거점수거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범위

(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3제4항 관련)

1. 공통기준 : 다음 각 목의 시설, 장비 및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
 - 가. 보관시설 :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하려는 미래폐자원 품목에 따라
 - 1)부터 3)까지 규모의 보관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
 - 1) 구동축전지 : 200개 이상 보관시설
 - 2) 태양광 패널 : 100톤 이상 보관시설
 - 3) 기타 미래폐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- 나. 거점수거센터 내부에서 미래폐자원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
 - 다. 기술인력 : 그린전동자동차기사, 전기(산업)기사, 전기공사(산업)기사, 폐기물처리(산업)기사, 화공(산업)기사, 일반기계(산업)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, 화공, 화학, 기계 및 환경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
2. 성능평가 장비 :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하려는 미래폐자원 품목에 따라 성능평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
 - 가. 구동축전지 : 1)부터 5)까지의 장비 각 1식 이상
 - 1) 항온항습설비
 - 2) 직류전압측정기
 - 3) 절연저항측정기
 - 4) 잔존용량(SOC), 잔존수명(SOH)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
 - 5) 방전장비
 - 나. 태양광 패널 : 1)부터 4)까지의 장비 각 1식 이상
 - 1) 절연저항측정기
 - 2) 내전압측정기
 - 3) 외관 결함 검사 장비
 - 4) 출력 성능 측정 장비
 - 다. 기타 미래폐자원 : 기타 미래폐자원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

[] 폐자동차재활용업자 [] 파쇄재활용업자
[]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지위승계신고서
[] 폐가스류처리업자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	
신고인	①상호(명칭)	④전화번호		
	②주소(사무실)	⑤법인등록번호		
	③대표자 성명	⑥사업자등록번호		
승 계 내 용	⑦상호(명칭)	⑩전화번호		
	⑧주소(사무실)	⑪법인등록번호		
	⑨대표자 성명	⑫사업자등록번호		
	승 계 대 상	구 분	[] 파쇄재활용업 [] 파쇄잔재물재활용업 [] 폐가스류처리업	
		⑬ 업종		
		⑭ 등록일		
		⑮ 등록번호		

승계사유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가. 양도·양수의 경우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.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요령

- ①부터 ⑥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⑦부터 ⑮까지는 지위승계 이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적정 여부 확인)	→	결재
신고인	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	처리기관 (한국환경공단)		처리기관 (한국환경공단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5(<u>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</u>) 법 제16조의4제5항에 <u>따른</u>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제5조의5(<u>대형제품 및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</u>) ----- <u>따른 대형제품 및</u> ----- -----.
제11조의3(<u>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운영</u>) <신 설>	제11조의3(<u>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설치·운영</u>)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<u>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·장치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.</u> 1. <u>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구동전동기</u> 2. <u>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감속기</u> 3. <u>전기자동차·하이브리드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 전력변환장치</u> 4. <u>수소전기자동차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</u> 5. <u>건설기계·농업기계 구동전동기</u> ②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
<신 설>	

<신 설>

<신 설>

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정하는 폐기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.

1. 태양광 패널

2. 풍력발전기 나셀

3. 풍력발전기 블레이드

4. 에너지저장 장치에 탑재된 축전지

③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“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”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④ 법 제20조의4제4항 단서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별표 2의3과 같다.

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⑥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-----

-----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</u>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	⑦ 제2항, 제5항 및 제6항----- ----- <u>공단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할 때</u> ----- -----.
---	--